

해양경찰청 훈령 제 164호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2년 00월 00일

해양경찰청장

##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

#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연안사고예방법(’21. 4. 10.)」, 동법 시행규칙(’21. 10. 14.)에 따른 훈령정비
- 나. 現 규정상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수립·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해소
- 다. 교육의 적절성,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양질의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해당연도 1월 31일까지”를 “전년도 12월 31일까지”로 변경하여 일정 공백 해소(안 제4조 제2항)
- 나. [별지 1]의 서식, 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조항 신설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1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)**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은 본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

**제3조(위탁기관의 지정 기준)**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기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**제4조(안전교육 실시계획)**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의 시설과 교육의 종류별 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전년도 12월 31일까지는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일 7일 전에 제2항에 정한 연간일정을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안전교육계획의 공고)**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 계획을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와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안전교육장의 점검)**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장의 시설이 적합한지 여부 및 안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
### **제3장 안전교육의 절차**

**제7조(신청서 등의 비치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의 2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.

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안전교육장에 입실시켜서는 아니 된다.

**제8조(신청서 접수절차 등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기재사항의 적정여부
2. 신청서 제출자와 안전교육 대상자의 동일인 여부
3. 규칙 제6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
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재여부
5. 이전 교육 수료증의 교육일자 확인 (갱신교육일 경우)

**제9조(수강자의 입실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대상자를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시켜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강자를 교육장에 입실시키지 않고 불출석 처리하여야 하며, 수강자가 교육 중 무단 퇴실한 경우 재 입실 시킬 수 없다.

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장 입구에서 수강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리수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
④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대상자 아닌 자를 교육장 내에 입실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관계공무원, 그 밖에 위탁기관의 감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0조(안전교육장의 활용)** ① 안전교육은 위탁기관의 시설(안전교육장 또는 대학교 부대시설)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인 이상의 수강자가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상교육 등 교육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출장교육)** ① 위탁기관은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신청자가 10인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강대상 인원의 확인방법은 서면, 전화, 인터넷 등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며, 신청자가 안전교육 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안전교육의 관리·감독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감독관을 선임하여 관리, 감독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감독관의 임무는 대리출석 여부의 확인, 무단 입·퇴실자에 대한 조치, 음주·소란의 방지 등이다.
- 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 후 수강인원을 확인·점검하여야 하며, 교육 시작 때의 인원과 교육종료 시점의 인원을 대조하여 중간퇴실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감독관은 안전교육 실시 중에 천재지변, 정전 등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종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교육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의 사유로 안전교육이 중단되었을 때는 그 중단된 이후의 나머지 교육은 차기 교육 일에 소집하여 실시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모두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부할 수 없다.
- ⑦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출석자로 처리하여야 한다.
1. 대리수강중인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
  2. 수강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
  3. 수강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
  4. 수강 중 음주, 취식, 소란 등 그 밖에 사유로 교육의 진행에 방해를 주어 강제퇴실 당한 경우
- ⑧ 감독관은 교육종료 즉시 교육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, 수강자 2명으로부터 총 교육인원에 대한 입회확인 후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안전교육의 준비사항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전에 미리 각종 기자재를 점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비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료증 등의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#### **제4장 그 밖에 행정절차**

**제14조(서류의 보관 및 관리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 등 각종서류를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비치하고,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·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서류는 다음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교육장의 안내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들이 안전교육장을 찾아 오기 쉽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의 위치를 전화자동응답, 인터넷 그 밖에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교육실시 결과 제출)**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맞춰 매월 5일까지 해양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재검토 기한)** 해양경찰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.  
안전교육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### [수집항목]

☞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

### [수집목적]

- ☞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 처리  
☞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만족도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 처리

### [보유기간]

☞ 안전교육 행정처리 업무를 위해 3년간 보관

### [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]

- 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 
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교육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.

### [수집기관 및 부서]

☞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, 안전교육 위탁기관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

[ ] 동의함 [ ] 동의하지 않음

### [고유식별정보 수집]

☞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### [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]

- ☞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 
☞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안전교육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.

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

[ ] 동의함 [ ] 동의하지 않음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□ **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**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<u>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</u>」 제11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</u>」 제11의2제1항 ----- <u>시행규칙</u> 제6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안전교육 실시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<u>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</u>는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일 <u>15일</u> 전에 제2항에 정한 연간일정을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안전교육 실시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년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7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7조(신청서 등의 비치)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신청서 접수절차 등)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규칙 제6조제4항 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

4. 5. (생략)

제10조(안전교육장의 활용) ① (생략)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인 이상의 수강자가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

제7조(신청서 등의 비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6조의2제2항 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법 제11조의2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신청서 접수절차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규칙 제6조제2항 별표2-----  
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안전교육장의 활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10-----  
-----

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 
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출장교육) ① 위탁기관은 출  
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신청자가  
20인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출장교육) ① -----  
-----  
10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